



태국의 전자거래법 현안과 우리나라 유관법률에의 시사점

심 종 석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I. 서론

II. ETA의 의의와 주요 골자

1. 제정 취지
2. 구성 체계
3. 주요 골자

III. 태국 전자거래법의 평가

1. 전문(Preamble) 및 용어의 정의
2.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규정

IV. 시사점 및 결론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서론

태국은 우리나라의 15번째 무역상대국으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0% 이상을 수출 지향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중진개도국이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다음의 중심국가로서 그 지위를 점한다.

현재 태국은 우리나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해당하는 수준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2009년 이후 전체 수출의 약 75%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산품 중 컴퓨터 및 IT 기반 전자기자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태국이 AFTA 역내 당해 산업의 생산허브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층 확산되고 있음을 함의한다.¹⁾ 이 같은 배경에서 태국은 최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IT 기반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자동차 등 14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유관산업별 기간망의 연계·확충을 통해 AFTA 중심국으로서의 도약을 의욕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고는 태국의 국가정책적 산업부양의 추이를 주시함에 있어, 특별히 전자거래 분야의 기반인프라로서 법제적 차원에서의 입법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태국은 그간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적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후발국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최근 당해 분야의 순기능적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서 소기의 입법성과를 개선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해 입법성과로서 뿐만 아니라 현행 태국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축법제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이하 ETA)을 중심으로 동법의 법적 의의 및 특징점을 분석·평가하여 이로부터 법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²⁾

요컨대 그 내용은, 첫째 ETA의 분석·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관법제상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을 적시하고, 둘째 ETA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유관법률과의 입법적 열·우위를 추론함과 동시에, 셋째 이로부터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적·상무적 건련성 및 양자간 합목적성 도모에 적의 참조할 수 있는 단초제공 등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태국 ETA를 모토로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 본고는 저자가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제12권(2010.12.27)에 발표한 “태국의 전자거래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연구결과를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 출간·기획의도에 부합하게 수정·보완 후 재편한 것임을 밝힌다.

1) 태국의 경제지표에 관한 상세는 나희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남아학회, 2010, 148-150면.
 2) ETA의 전문(全文)은 www.bot.or.th/English/PaymentSystems/BOT_ps/PSRegulation/Documents/et_act_2544_Eng.pdf 또는 www.thailaws.com. [이하 기술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한다(2014.11.05)]

‘전자거래기본법’) 및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공표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ECIC)³⁾과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⁴⁾,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⁵⁾과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⁶⁾ 등을 비교법적 대상으로 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상의 법규범을 법제적 분석도구로 취한 이유는 주지하듯 개별 법규범이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도적 입법례로서의 위상을 표창하고 있음과 동시에, 주요 국가의 유관한 입법 시에 모범법(model law) 내지 표준으로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개진한 성과에 기인한다.

II. ETA의 의의와 주요 골자

1. 제정 취지

ETA는 1997년 국가정보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NITC)⁷⁾의 주도하에 발의된 입법계획안을 모토로 2001년 최종 성안·공표되었다. 태국은 동법 제정 전까지 전자거래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부재했던 까닭에,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법적 사안은 타법률 내지 유관법령의 부칙에 기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의 유추적용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후 전자거래에 관한 각양의 법적 문제점이 끊임없이 불거짐에 따라 NITC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입법불비에 기한 불이익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입법에 착수하였다. 당시 NITC는 MLEC, UETA, UCITA 등을 모범법으로 하여 이를 자국

-
- 3) UECIC에 관한 상세는 다음의 논문과 책을 참조.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1.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3, 173-193면, 832-843면. UECIC 전문은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 (이하 ETA를 비롯하여 비교법적 대상으로서 개별 법규범의 해당 조문은 한정된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당해 웹사이트에 일임해 두고자 한다.)
- 4) MLEC 전문은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
- 5) UETA 전문은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pdf.
- 6) UCITA 전문은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
- 7) NITC의 역할 및 제반 활동사항에 관해서는 www.nitc.go.th.

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재·개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ETA는 특별히 MLEC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리적 근간을 가감없이 계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에 있어 핵심적 매개(intermediary)로 기능하고 있는 전자문서(data message)⁸⁾를 기존의 전통적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로서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이로부터 국내·외 전자거래의 이용촉진과 규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종전 전자거래에 관련한 하위법령의 법적 기준을 명료히 확립하여 정부주도의 전자거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안성 강화, 정보보호,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요컨대, ETA의 입법상 법적 실익은 종이문서의 법적·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문서의 법적 기반 마련에 따른 국제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국제표준으로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의 수용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촉진, 국내·외 공인인증서(CA)의 상용화에 기한 법적 불안정성 제거, 제반 국제표준의 수용에 따른 국내법과의 조화 도모,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표준 마련에 있어서의 법적 기준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구성 체계

ETA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포함한 전문(preamble) 6개조와 이하 총 6개의 개별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전문은 ETA 범명(제1조)과 효력발생시기(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용어의 정의(제4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주목할 것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국제법 규범 내지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4조는 차례로 거래(transaction), 전자적(electronic),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정보·정보시스템(information & information system), 전자문서(data message),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8)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MLEC, UECIC, UETA, UCITA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메시지'(datamessages)가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의미와 상통하고(제2조 제1항) 규정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전통적 종이문서와의 상호 대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이하 '전자문서'(data messages)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제반 국제기구 및 각 국 간 실정법에 정의되어진 전자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Chapter III,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icle 3,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Article 11, UETA Section 2, (7), (13), UCITA Section 102, (28), (54), E-Sign Section 106, (4), UECA Article 1, (a), 일본의 「電子署名及び認業務に關する法律」第2條, 말레이시아의 'Digital Signature Act (1997)' Article 2 등.

interchange), 작성(송신)자 및 수신자(originator & addressee), 중개자(intermediary), 인증서(certificate), 서명자(signatory)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MLEC와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문서(data message),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작성(송신)자 및 수신자(originator & addressee), 중개자(intermediary), 인증서(certificate), 서명자(signatory)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MLEC와 전자거래기본법에 견주어 ‘거래와 전자거래’, ‘정보’, ‘전자서명’, ‘인증서 및 서명자’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또는 구체화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순기능적 차이점이 부각된다.

제1장은 전자거래의 일반요건 및 제한요건, 적용범위 등을 특정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성(documentation)과 증거력,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기준 및 효력발생기, 전자문서 작성자와 송·수신자 간 인증 및 서명요건, 전자문서의 오류와 착오에 기한 법률효과, 신의칙에 기한 특단의 주의의무, 매체중립성(media-neutrality)에 따른 전자문서의 유효성 보장요건, 정보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 교환에 따른 법적 인증요건,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확보와 관련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이하 MLES)과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비견된다. 다만, 태국은 전자서명법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ETA에서 병합하여 다루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전자서명의 법적 요건 및 법률효과,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인증요건, 인증서비스 시스템 제공에 따른 기준과 법적 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 충족요건 등이다.

제3장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법적 수용 또는 충족요건으로서 자격, 구비사항, 재정자립도 등의 세부 기준 등이다. 그 밖에 제4장과 제5장은 공히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전자거래에 따른 적용요건 내지 범위를 명정하여 국내 전자정부에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창하고 있는 부속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3. 주요 골자

전술한 바 ETA는 총 제6장 제4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preamble)을 위시하여 제1장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제2장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s), 제3장 ‘서비스부분의 전자거래’(service business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제4장 ‘공공부분의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public sector), 제5장 ‘전자거래위원회’(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및 요건’, 제6장 ‘벌칙규정’(penalties)

등으로 구성된, 이를테면 전자서명을 합체한 복합·다기능의 법률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명시적으로 표창하고 있지는 않으나, ETA는 전자거래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문이 MLEC을 그대로 계수하고 있는 특징을 엿보이고 있다.

각 장의 주요 골자로서, 우선 전문은 여타 범규범의 처지에서와 같이 장별 조문구성으로 체계화 하지 않고 오로지 개별조문으로 순차에 따라 나열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 순차는 범명, 효력발생시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등이다. ETA 전문내용에 비추어 그 효력은 관보게재 후 120일 이후부터 개시되며, 적용범위는 칙령(royal decree)에 의해 제한된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 문서에 의한 전자거래에 있어 민·상사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관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거래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전문의 규정은 MLEC의 규정을 가감없이 계수한 결과로 판단되나,⁹⁾ 다만 민사적 성격의 거래에 관한 적용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이할 사항이다(제3조). 생각컨대 그 이유는 ETA가 'transaction'에 대한 의미를 MLEC의 'commerce'와 명료히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전자거래기본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ETA의 특·장점이라 판단된다. 당해 논점은 후술한다.

제1장은 전자거래에 관한 총칙으로서 전자문서의 효력, 문서성, 전통적 종이문서 또는 일부인(stamp)과의 기능적 등가성, 전자문서의 신뢰성·진정성·무결성 요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부인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제2장은 전자문서의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기능적 매개(functional intermediary)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곧 전자서명을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자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city) 및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¹⁰⁾

제3장은 전자거래에 있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대부분이 칙령에 의한 제한요건 및 법적 구속력 확보, 타법률과의 관계, 전자거래의 한도액과 이와 관련한 법 적용상의 문제, 동법 적용상 여타 규정에서의 제한과 단서규정 및 법원에의 재량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4장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전자거래를 단일조항(제35조)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

9)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1999, paras. 26-27.

10) 통상 진정성은 정보통신시스템(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system)에서 사용자, 장치 또는 실체를 확인하여 이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으로 설명되고, 무결성은 자료나 정보가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속성을 말한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III.

용은 서비스 부문에 한하여 주 기관(state agency)의 주무사항으로서 신청·허가·등록·행정명령·지불·통지 또는 어떠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조치가 칙령에 의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생성한 경우 ETA 적용에 의한 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 밖에 제5장은 전자거래위원회의 권한·의무·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 및 임기, 유관한 위원회와의 협력과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¹⁾ 제6장은 동법의 적용에 따른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III. 태국 전자거래법의 평가

1. 전문(Preamble) 및 용어의 정의

1) 전자거래

ETA(electronic transactions act)는 공식명칭에 있어 ‘거래’를 ‘transactions’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의 의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충되는데, 곧 거래는 ‘민사 또는 상사활동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조는 외견상 MLEC 범명상거래(commerce)와 상사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이라는 적용범위에 연관되는 규정임과 동시에(제1조),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에 관한 용어의 정의(제2조 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정의규정과 연관되는 규정이다(제2조 제1항).¹²⁾

살피기에 MLEC는 동조의 해제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배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거래로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¹³⁾ 적용범위를 상사적 활동에 국한하고 있음에 비하여, ETA는 민사적 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양법을 비교할 경우

11) 본고는 분석도구로 취한 타법규범과의 비교법적 고찰에 따른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하 ETA의 전문과 제1장, 제25조까지를 본고 연구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12) 이 경우 우리나라는 양법 당해 조문에서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동일한 의미로 의제하고 있다. 곧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으로서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다.

13)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op. cit., p.3.

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ETA는 당해 의미를 보다 명료히 특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진일보한 입법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ETA는 민사활동에 대한 포괄적 수용을 명시적으로 표창하고 있어, ETA 적용상 하위 또는 유관법률과의 충돌방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전자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적용범위 내지 각각의 개념상 명확한 구분을 표창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입법적 실익이 부각된다.

당해 실익에 따른 논점을 상술하기에, ‘transactions’는 통상 ‘거래’라고 번역되고 있음이 통례이나, 강학상 법률용어로서는 ‘법률행위’로 사용된다. 즉, 법률행위는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모두 ‘transactions’에 포함된다. 따라서 ‘transactions’은 ‘contract’보다 그 의미가 광의적이다.¹⁴⁾ 그렇다면 ‘transactions’는 상행위 활동에 관련한 ‘commerce’보다는 적용범위가 넓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결국 법명에 비추어 ETA는 명실공히 민사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거래는 물론이고 적용대상을 상행위의 주체로서 상인뿐만 아니라 거래의 통념상 소비자에까지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이로부터의 법적 실익을 추론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거래의 의미는 법률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으로 취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다면 상거래는 그 주체를 일정한 상업적 이해득실을 우선시 하고 있는 상인(merchant)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 근거는 국가 간 상거래에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상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전자거래’의 개념과 범위는 각각 달리 사용되고 구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것이라는 데 있다. 환언하면 국가 간 전자거래에 있어 ‘기업(상인) 간’(B2B) 상거래는 이를 ‘전자상거래’의 범위로 포함하고, 달리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각국의 실정법상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경향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제사법 내지 강행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기업(상인)의 신속·원활한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배려하고 또한 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참작할 때, ETA의 이 같은 구분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본다.¹⁵⁾

14)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p.519, 연관규정으로서 UCITA, 제102조 제7항, 제11항, 제26항, 제30항, 제45항.

15) 동일한 시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L 178/7, paras. (55), (56).조까지를 본고 연구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요컨대, ETA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적·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대상을 특정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달리 국제상거래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MLEC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전자거래기본법 및 유관법률에 비하여 그 대상을 명료히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순기능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고 본다.

2) 전자적 및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한편 MLEC 제2조 (a) 및 UECIC 제4조 (c)에서는 ETA 제4조 제5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data message)를 ‘전자·자기·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전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전자우편·전보·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특이할 것은 ETA 제4조 제2항에서는 ‘전자적’(electronic)이라는 의미를 추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자적·전기적·전자기계·광학적·자기적 수단의 장치 또는 기술에 관련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행입법례로서 UETA 제2조 제6항 및 UCITA 제102조 제26항과 동일하다. 한편, ETA 제4조 제7항 및 MLEC 제2조 (a), UECIC 제4조 (f)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UETA 제2조 제11항, UCITA 제102조 제36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자의 차이에 관하여, 정보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은 공히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용어의 정의 차원에서는 외견상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테면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는 명료한 개념을 추보하여 당해 용어의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ETA 등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통상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의제되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은 주지하듯 전자거래에 있어 널리 상용화 되어 있는 개념이다. 제반 법률에 비추어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해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일괄할 수 있다 (UECIC 제4조(g), 제12조).¹⁶⁾

이 경우 전자적 대리인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기대이익을 포함하여 신원·자격·상거래 적격 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상거래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매개로써 그 역할이 중요시 된다. 그 결과 제반 국내·외 법규범 하에서는 대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법률효과 내지 요건 등을 명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인증 또는 인증시스템’, ‘참여주체 및 시스템 제공자’, ‘전자적 대리인’, ‘자동화된 거래’ 등의 사안에 관한 책임귀속과 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뿐만 아니라 실무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구현수준에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 또는 약정 및 규약 등에 의해 동일한 효력을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¹⁸⁾

국제상거래에서 전자문서 및 인증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는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외 유관법규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어떻게 전향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곧 급진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술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규범을 적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절한 결론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종이문서에 기초한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결여로 상거래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ETA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또는 전자적 대리인 등의 기준 내지 요건을 명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타 개별조문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를 기능상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수용하여 다루고 있거나 또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automated information system)으로 의제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ETA의 정의규정상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NITC는

-
- 16) 이 경우 UECIC 제12조는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 당해 시스템과 송·수신자간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가 당해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앞선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 17) MELC 제13조 제2항, UECIC 제4조, 제7항, UETA 제2조 제6항, UCITA 제102조 제27항,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등.
 - 18)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구현사례 및 법적 효력에 관한 상세는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를 참조.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컨대 ETA 예하에 하위입법을 마련함에 있어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전자거래의 추이에 따라 개정입법 내지 관련 입법에 대한 연관성 내지 합목적성을 시의성 있게 관망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까지 총 21차에 걸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의 연혁에 같음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그 밖의 정의규정

ETA 일반규정에서 명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항은 대개 전자거래기본법을 포함하여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특단의 차이점은 엿볼 수 없다. 이를테면 앞서 전술한 것을 제외하고 ETA에서는 ‘정보’(information)를 ‘서면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부수하는 숫자·소리·이미지 또는 이로부터 함축 가능한 일체의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제4조 제4항), 이는 앞선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견줄 수 있다. 당해 용어의 정의는 UETA 제2조 제10항 및 UCITA 제102조 제27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

동일한 시각에서 ETA상 ‘중개자’(intermediary)에 관한 정의 제4조 제11항 또한 MLEC상 그것과 다름이 없는데(제2조 (e)), 곧 ‘특정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타인을 대신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발신·수신 또는 저장하거나 그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ETA 정의규정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은 전자서명 및 국내 법상 효력을 담보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제외하고, 여타 법규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래’, ‘전자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규정

1) 전자문서의 문서성 및 법적 승인

전자문서가 전자계약의 수단으로서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종이 문서에 상당한 동일한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족요건은 첫째, 전자문서에 포함된 기록 또는 내용의 차이가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전달수단의 차이로 보아 법적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점이 보장되어야 하고,¹⁹⁾ 둘째, 전자문서 관계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수용된 정보, 즉 기록·내용 등에 항시

19) 八尾 晃, 「貿易·金融の國際取引: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p.63.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MLEC 제6조 제1항, UECIC 제9조 제2항) 셋째, 전자문서를 보존·유지·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상의 전제와 조건은 달리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라도 배제될 수 없어야 함이 보장되어야 할 것 등이다(MLEC 제5조 bis., UECIC 제8조).

이에 대하여 ETA에서는 전자문서(정보)가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정하여 전통적 종이문서에 상당한 법적·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제8조). 이 경우 정보는 전자문서에 의제된다.

이상의 규정은 전자문서의 법적 허용에 따른 MLEC 제5조 내지 제6조,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의 법적 승인에 따른 UECIC 제8조 제1항,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과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에 관한 UETA 제7조, 전자기록 및 진정성에 대한 법적 승인 및 전자적 대리인 이용에 관한 UCITA 제107조,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본 규정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2008년 NITC에 의한 ETA의 개정시 태국의 제반 국내법적 법률효과의 인정요건으로서 일부인(stamp)에 의한 전자문서와의 동기능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어떤 문서가 법률에 의해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방법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정에 특단의 제한이 없다면, 이러한 문서는 일부인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여타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내지 정보의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과 관련하여 ETA에서는 정보는 원본문서로 제시하거나 원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원본문서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 경우 제한요건은 정보의 완전성 내지 신뢰성 확보 여부의 법적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 권한기관에 위임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본조는 2008년 개정된 조문으로서 전자문서의 증거력보장규정에 의해 보충된다(제11조). 당해 조문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전자문서는 증거로 확보될 수 있는 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전적으로 거부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의 증거력 인정요건은 신뢰성 확보여부에 있어 그 방법 또는 작성·저장 또는 전달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⁰⁾

20) 참고로 MLEC 제7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으로써 당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제반 법체제하에서 주요한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어떠한 상황 하에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것이적당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UECIC에서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UECIC의 어떠

2)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

ETA는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UECIC를 제외한 여타 법규범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를 명정하고 있다.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 또는 승낙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다만 UECIC상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제11조),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formation, 제12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제13조)에 대한 규정은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전자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하다는 사항과 함께 ETA 입법상 불비라고 적시할 수 있다.

이상의 논점에 관한 순기능적 입법방향으로서는 UECIC의 유관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차례로 청약의 유인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1인 또는 복수 이상의 특정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당사자가 통상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당해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것(제11조), 계약체결 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동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당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제12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있어 UECIC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못한 것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경우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그 사용된 수단이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법적 안정성 및 순기능적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것(제13조) 등이다.

3)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에 비하여 익명적 상거래(anonymous commerce)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후의 구제수단이 취약하고 회복과정 또한 복잡다단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상거래 안전’과 ‘계약당사자 보호’라 할 수 있다.²¹⁾ 이 같은 배경에서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의 확정이라는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일한 시각에서 ETA뿐만 아니라 여타 법규범에서는 대부분 공히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정해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ETA는 송·수신자 간 의사표시나 통지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본조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기한 제7조의 연관규정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이는 전자문서가 송신자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단서규정으로서 전자문서의 송신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일 경우와 송신인이나 그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에 의해 사전에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프로그램 된 정보시스템에 의할 것을 요건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수신인이 전자문서를 수신인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기 위해서는 당해 전자문서가 송신인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송신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및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발신된 경우를 제한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6조).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내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조각된다.

한편, 전자문서의 수령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참조되어야 할 사항은, 곧 송신인은 당해 전자문서의 수령에 관하여 특별한 형태나 방식 등에 의한다고 하는 수신인과 별단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당해 수령여부는 수신인이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또는 그 밖의 적절

21) Jan Grijpink,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1, 7.

한 방법으로 또는 수신인이 송신인에게 표시하기 위한 충분한 행위에 의해 수신인의 전자문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송신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 의의를 새길 수 있다. 따라서 송신인은 당해 전자문서가 수신인으로부터 수령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전자문서의 송신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보장받게 된다(제19조).

다른 한편, 송신인이 수신인의 수신확인 응답을 받은 경우 그것은 수신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며(제20조), 이 경우 수신확인에 따른 통지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수신인이 관련 전자문서를 수신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송신인과 수신인으로 합의 또는 해당 표준이 전제되어야 한다(제21조).

전자문서의 발송은 전자문서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때 송신인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되며(제22조), 전자문서의 수령은 이러한 전자문서가 수신인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법규범에서의 도달주의의 수용과 다르지 않은 규정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신에 대한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그것은 전자문서의 수령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수령이 그 문서가 정보시스템 내에서 검색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제23조).

한편, 전자문서의 발송 또는 수령은 발신인의 영업소에서 발송하거나 수신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송신인이나 수신인이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업소가 된다. 그러나 만약 당해 연관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영업소를 전자문서가 발송되거나 수령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상위 영업소에 대한 특징은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의외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특단의 주의가 요구된다.²²⁾ 그렇지만 송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상거소가 전자문서의 수령 혹은 발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고 있음은 여타 법규범과

22) UECIC 제6조는 영업소의 위치 명정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나,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관련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이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고 하고 자연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본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다르지 않다.

IV. 시사점 및 결론

ETA의 평가 내지 이로부터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A는 전자거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전통적 종이문서와 기능적 동가물로서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확보, 종전 전자거래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법적 기준제시, 정부주도의 전자거래촉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안성 강화, 정보보호,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ETA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내용이 여타 국제법규범 내지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를테면, 거래와 전자거래, 정보, 전자서명, 인증서 및 서명자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또는 구체화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동법의 적용상 순기능적 차이점을 부각할 수 있다.

셋째, ETA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고,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제상거래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MLEC에 비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유관법률에 비하여 그 대상을 명료히 특정·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법적 의의가 돋보이고 있다.

넷째, ETA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또는 전자적 대리인 등의 요건을 정의규정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조문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능상 정보시스템에 수용하여 이를 합체하여 다루고 있거나 또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의제해 두고 있다.

다섯째, ETA 일반규정에서 명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전자거래기본법을 포함하여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별단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서명 및 국내법상의 효력요건을 부가하기 위한 관련 용어를 제외하고, 여타 법규범에서는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 거래, 전자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여섯째, ETA 개정법령에 비추어 태국의 제반 국내법적 법률효과의 인정요건으로서 스탬프에 의한 전자문서와의 등기능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골자는 어떤 문서가 법률에 의해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방법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정에 달리 제한이 없음을 조건으로 이러한 문서는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여타 국내 실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곱째, ETA에서는 UECIC를 제외한 타법률의 규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를 명정하고 있다.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 또는 승낙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UECIC에서와 같이 청약의 유인,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효력부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타 법규범에 견줄 경우 ETA의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된다.

ETA를 통한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법적 함의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료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전자거래기본법의 범명에는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규정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례로 연관규정으로서 동법 제30조에 비추어 자구의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그 범명을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는 당해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전자상거래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대리인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이 없이, 다만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내에 합체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 바,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특정 및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선언적 효력을 고려하여 이를테면 UETA, UCITA, UECIC 등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관하여, UECIC에서는 전문에서 기술적 중립성과 등기능성의 원칙에 따라 이에 관한 통일적 규정은 당사국이 관련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각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제반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동일한 시각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공히 보장하고는 있으나,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인증신청에 있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적용범위에 기하여 전자문서의 제한요건을 동법 내에 수용해 두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일 것이라 본다.

셋째,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대한 후보규정과 형식요건에 있어서의 제한요건이 일부 미비한 실정이다.

넷째,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아울러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업소가 복수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상거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송·수신시기에 관한 규정은 ‘입력된 때’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의 송·수신책임에 기한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환언하면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 개입된 경우, 대리관계에 있어 작성자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확정함에 있어 UECIC상의 ‘떠난 때 또는 떠나지 않았다면 수신된 때’라고 하는 내용에 준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한편으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매개로 한 상업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효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다섯째,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동법에서의 내용은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아울러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그 밖의 사항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송신자의 정의 규정,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당해 전자문서에 기한 기속효과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성자의 대리인,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전자적 의사표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나희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남아학회, 2010.
-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 _____,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3.
- _____,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 Jan Griepink,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²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1.
-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 UNCITRAL,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1999.
- 八尾 晃, 「貿易・金融の國際取引 :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 www.bot.or.th/English/PaymentSystems/BOT_ps/PSRegulation/Documents/et_act_2544_Eng.pdf.
-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pdf.
-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
- www.nitc.go.th.
- www.thaiembassy.or.kr.
- www.thailaws.com.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